

# 美國의 “鷄卵生產 調整法” 案

송 정 택  
(가금협회 전무이사)

養鷄業의 週期的인 不況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世界的인趨勢로서 美國에서도 安定되어야 할 基幹產業인 農業分野를 뒤흔들고 있어 政策遂行者들에게 있어서는 큰 課題의 하나로 되어 있다. 이에 美國會에서 鷄卵產業調整法으로立法化段階에 이르고 있다. 가까운 日本에서는 이를 본받을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養鷄政策에 많은 參考가 되리라 믿어 이에 掲載하는 바이다.

美合衆國의 鷄卵產業 즉 採卵養鷄와 그 關聯產業은 目下 非常事態에 遭遇하고 있다. 1970년十月以來 生產者卵價가 生產費以下로 떨어져 採卵養鷄家의 赤字는 實로 四億弗에 達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美國採卵養鷄家連合의 全國的인 運動이 奏効하여 農務省도 이에 同調하게 되어 지난 11월에 上院 및 下院에 議員立法으로써 “鷄卵產業調整法”案이 同時に 國會에 提出되게 되었다. 다음은 이法案의 全文이다.

그趣旨는 卵價對策으로서 一萬隻以上의 採卵養鷄에 關하여 產卵鷄의 屠殺을 法律로 強制하여 鷄卵의 需給의 바alanス를 圖謀하고 生產者나 消費者에게 適正한 卵價를 出現시키고자 함에 있다.

이는 2년간의 時限立法으로서 國會의 決議에 依하여立法이 成立되게 되어 있는데 結果가 注目할만하다 하겠다.

## 法 案

이法案은 市場鷄卵의 生產者가 消費者的 必要에 應하여 充分하되 過剩되지 않는 量의 鷄卵을 不斷히 供給함이 可能케 하며 또한 生產者와 消費者 모두에게 適正한 價格으로 계란의 질서 있는 流通狀態를 安定維持發展케 함을 目的으로 한다. 이는 美合衆國의 上院과 下院議員의 議會出席者에 依하여立法化되는 것으로 한다.

**第一條** 이法律은 “鷄卵產業調整法”이라 稱한다.

### 立法의 必要性

**第二條** 過剩된 鷄卵을 生產하는 成鷄나 種鷄의 州間交易에 依한 移動은 國家의 信用機構의

基盤인 農民의 購買力を 壓迫하고 農業資產의 價值를 破壞하여 州間交易의 負擔이 되고 이를 阻害함이 明白하게 되었다. 鷄卵은 飲食物의 基本的인 自然食品의 하나이다. 그것은 合衆國의 全地域에서 多數의 個個의 生產者에 依하여 生產되고 있다. 鷄卵은 大部分이 州間交易으로 移動하고 이의 經路로 移動하는 鷄卵의 州間交易의 直接的인 負擔이 되던가 여기에 影響을 帶친다. 合衆國에 있어서의 모든 採卵鷄와 生產되는 鷄卵은 州間交易 또는 外國貿易의 流通에 依하여 있으나 이들 物品과 그 加加工品의 州間交易 또는 外國貿易의 直接負擔이 되어 이를 阻害하고 또는 影響을 준다. 市場鷄卵의 供給은 必須의 으로 採卵鷄의 供給에 依存한다. 州間交易에 提供되는 鷄卵의 供給을 規制한다는 것이다.

市販鷄卵의 消費者價格과 生產者價格은 모두 需給事情에 應하여 變動된다. 市販鷄卵의 生產者가 消費者の 需要에 附應할合理的인 鷄卵의 數量을豫測한 다른 일이 生產者自身的 制御를 넘는다는 理由에 依하여 可能치 않게 되고 그結果로서 供給過剩이 되풀이되어 市價를 現實의 生產費以下로 低落시키거나, 供給不足이 되풀이되어 比較的 높은 消費者價格의 原因이 되었다. 이의 需給의 變動은 잦게 生產者와 消費者雙方에게 州間交易에 不利益한 影響을 주는 不安定하고 混亂된 狀態를 再演시켜 왔었다.

### 政策의 宣言

**第三條** 以下の 일을 議會의 政策으로서 宣言

한다.

(A) 이法律에 依하여 農務長官이 賦與되는 權限을 行使하고로써 飼料價格, 飼料의 有効供給量, 鷄卵生產에 影響하는 經濟的諸條件과 鷄卵의 市場에 對한 供給과 需要에 影響하는 餘他의 經濟的條件을勘하여 合理的으로 生覺되는 生產者卵價를 實現시킬 수 있는 秩序있는 市場條件를 確立하고 維持한다.

(B) 消費者의 利益을 擁護하기 為하여

(1) 農林長官이 公共의 利益에 合致하고 또는 國內 및 國外의 可及의 早速한 時期에 (A)項目에 있어 議會의 政策으로서 그의 確立을 宣言하는 價格水準까지 現在의 價格을 漸次近接시킨다.

(2) 이法律로서는 이條項의 (A)項目으로 確立되는 것을 議會의 政策이라고 宣言한 water以上으로 生產者價格을 維持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如何한 行爲도 容納하지 않는다.

(C) 부로일터 및 부로일리用 種鷄의 育成은 市販鷄卵의 生產과 別個의 產業이므로, 이法律의 對象으로는 어찌한 方法에 依하여 듣지 포함되지 않는다.

#### 鷄卵產業調整委員會

**第四條** (A) 長官은 賦與된 權限에 依하여 15人에 依하여 構成되는 鷄卵產業調整委員會(以下委員會라 함)를 組織하여야만 한다. 委員會는 市販鷄卵의 生產者 또는 그의 代表에 依하여 構成되어 長官에 依하여 選任된다.

(B) 選任된 委員會委員과 補充委員은 長官의 定한 바에 依하여 國內市販鷄卵의 生產地域을 地域적으로 比例적으로 代表되는 것이라야 한다.

長官은 市場生產者團體가 提出하는 候補者 가운데서 任命하여야만 한다. 혹시 農務長官이 市販鷄卵生產者의 相當數가 市販鷄卵生產者團體의 그 어떤 會員이 아니던가 이들의 利益이 代表되지 아니한다고 認定되었을 경우는 長官은 이들 生產者の 市販鷄卵이 合衆國內의 全市販鷄卵中에 차지하는比重

을 現實的으로反映되는 限度內에서 長官이 定하는 方式에 依하여 이를 生產者들로부터 提出되는 候補者中에서 委員會의 委員을 選任할 수가 있다.

(C) 委員의 任期는 二年을 넘지 아니하는期間으로 하고 委員 및 補充委員은 長官의 要求에 應하여 職務를 行하여야만 하다. 長官은 助言을 職務로 하는 議決權을 갖지 아니하는 職權委員을 任命할 수가 있다. 이委員은 四名을 넘지 아니해야 하며 長官要求에 依하여 職務를 行한다.

(D) 委員會는 半年에 1回 또는 그以上 長官의 召集 또는 委員의 1/3以上의 要請에 依하여 開催된다.

(E) 委員의 2/3以上의 多數決에 依하여 委員會의 廢止를 要請했을시 또는 長官이 이委員會의 存續이 이法律의 宣言政策에 有効하지 못하다고 認定되었을 時는 이委員會는 폐지된다. 이委員會의 終止는 將來狀況이 變化하고 이委員會의 再組織이 이法律의 宣言政策에 有効하다고 長官이 認定하는 경우 長官은 새로운 委員會를 再組織하는 일을 妨害해서는 不된다.

(F) 委員會의 委員 및 補充委員은 無報酬로 한다. 但 必要한 支出은 長官의 定하는 바 限度와 方法에 따라 長官에 依하여 補償된다.

#### 委員會의 義務와 權限

**第五條** (A) 委員會는 이法律의 第七條로 規定되는 條項을 包含한 市販鷄卵의 供給調整에 關한 規制計劃을, 또 이에 對한 修正을 包含하여 長官에게 勸告하여야만 한다. 長官은 이法律에 依하여 얻어지는 報告書나 記錄으로 利用될 수 있든지 또는 委員會가前述한 勸告를 行하기 為하여 要求되는 統計, 資料, 其他의 情報를 委員會에 提出하여야만 한다. 但 當事者の 文書에 依한 同意가 있을 경우를 除하고 如何한 情報니個人の 個別의 經營을 밝혀서는 안된다.

(B) 委員會는 長官이 要求하였을 時는 이法律의 條項을 有効하게 하기 為하여 必要한 規定과 規則의 作成에 關聯하여 長官에게

勸告할 수 있다.

- (C) 委員會는 長官에게 諮問이 있을시는 이法律의 實施에 關한 義務와 責任을 負하여 야만 한다.
- (D) 委員會는 長官의 許可를 得하고는 委員會가 이法律에 根基한 義務와 責任을 다하기 為하여 必要하다고 思料되는 모든 奉仕와 協助를 얻으며 모든 施設을 利用하고 모든 大學, 研究機關, 家禽取扱團體, 農業協同組合 等의 모든 사람 또는 其他의 資格者를 使用할 수가 있다.

### 鷄卵生產業 調整計劃

**第六條** (A) 農務長官은 委員會의 勸告와 이法律의 條項에 根基하여 市販鷄卵의 供給을 調整하는 規制計劃 또는 이의 修正과 그 모든 條項이 이法律의 宣言政策을 有効하게 하는 傾向에 있음을 發見했을시는 (1)鷄卵生產者와 (2)成鷄의 販賣業者 또는 屠鷄處理하기 為하여 購入 또는 取得한 業者에 適用되는 市販鷄卵의 供給을 調整하는 規制計劃을 作成하고 隨時 修正할 수가 있다.

(B) 長官은 委員會가 勸告한 如何한 計劃 또는 그 어떠한 條項도 拒否할 수 있으나 그때에 長官은 委員會가 長官의 受諾을 얻을 수 있는 修正이 될 수 있도록 더우기 長官의 勸告를 불어서 委員會에 이에 對한 長官의 異議를 指摘하여 야만 한다.

(C) 鷄卵生產者를 代表하는 셈플(長官이 定한다)이 受取하는 季節調整濟 平均出荷卵價가 이生產者의 生產費를 超여도 계속 九十日間 下廻하였다고 長官이 認定한 後는 可能限 迅速히 이 計劃 또는 그 修正이 長官에 依하여 作成되며, 또한 이 季節的調整濟 平均出荷卵價가 超여도 九十日間이 標準을 上廻하였다고 長官이 認定한 後는 이 計劃은 長官에 依하여 存續되지 아니한다. 但 이項目에 根基한 長官의 認定은 最終的인 것으로서 裁制狀의 審查를 包含한 一切의 再審查의 對象이 되지 아니한다.

### 計劃의 條項과 條件

**第七條** 이法律에 根基하여 有効하게 되는 計劃은 다음 事項의 하나以上이 包含되어야 한

다.

- (A) 各生產者의 產卵雞總首數를 그 어떤 特定比의 首數로 減少시키기 為하여 必要한 部分의 屠殺의 要求나 또는 要求方法의 規制
- (B) 生產者와 生產이 그 生產者의 正常的인 經營을 適當히 代表하고 있지 아니할때의 不利를 緩和하여 公平한 取扱을 行하는데 必要한 調整과 例의 規定
- (C) 採卵雞를 屠殺하기 為한 購入, 또는 其他의 方法으로 取得한 모든 者에 對하여 生產者는 그 成鷄의 屠殺證明을 주어야 한다. 또한 이들에게 이 計劃에서合理的으로 要求되는 長官에게의 報告, 帳簿나 記錄을 保存하고 利用에 供與하도록 要求.
- (D) 長官이 指定하는 農務省의 機構와 人員 (改正土壤保全 및 國內分配法 第八條에 依하여 設立된 地方, 郡州의 委員會를 包含함) 으로 하여금 長官의 計劃運用을 為한 規定과 計劃에 依하여 得하게 되는 報告書와 其他情報의 蒐集, 編纂과 分析의 規定
- (E) 市販鷄卵의 有色과 白色의 生產要素의 差異의 識別, 長官은 그 差異에 正當한 理由가 있다고 認定할 때, 委員會의 勸告에 依하여 有色과 白色에 對하여 각己 다른 計劃을 發効시켜, 相異되는 率, 其他의 相異한 規定을 設定할 수 있다.
- (F) 一人이 所有 또는 支配하는 一萬首의 成鷄集團을 이 計劃의 特別한 條項, 또는 모든 條項으로부터 除外한다.
- (G) 이 計劃을 有効케 하기에 必要한 前揭의 條項에 付隨하여 矛盾되지 아니하는 條項과 條件

### 停止 또는 瘦止

**第八條** 長官은 이法律이 提示하는 計劃 또는 條項의 어떤것이 이法律의 宣言政策의 發効를 妨害하거나 그 促進傾向이 있는 것, 또는 그것이 公共의 利益에 反한다고 認定될 경우에는 長官은 이 計劃이나 해당되는 모든 條項의 運用을 瘦止하거나 停止시켜야 한다.

## 修正에 適用되는 條項

**第九條** 이 法律에 依한 如何한 計劃에도 適用 될 수 있는 이 法律의 條項은 이 計劃의 適用에 도 適用되어야 한다.

## 異議와 再審查

**第十條** (A) 이 計劃 또는 이 法律을 實施하기 為하여 만들어지는 規則의 對象이 되는 者는 長官에 對하여 文書로서 當該計劃 또는 規則이나 規定 또는 그에 根基함을 述하고 이의 修正 또는 免除를 申立할 수가 있다. 이와 한 者에게는 長官이 定하는 規則에 依하여 그 申立에 關한 意見을 陳述할 수 있는 機會가 주어져야만 한다. 長官은 申立人의 意見을 聽取한 後 이것이 法令에 合致할 때는 申立에 對하여 最終的決定을 지어야만 한다.

(B) 原告의 住所 또는 重要한 事業所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區裁判所는 當該 規制가 開始된 後 二十日 以內에 訴가 있을 때, 當該規制에 對한 司法上에 訴가 審查權을 갖는다. 이 訴에 對하여는 長官은 訴狀寫本을 送附 받는다. 裁判所는 當該規制가 法令에 合致되자 아니한다고 決定했을 때는

(1) 當該規制를 裁判所는 法令에 合致된다 고 決定할 수 있는 것으로 고치던가.

(2) 或은 法令의 定하는 바에 따라 上級裁判所에 그 訴를 進行하도록 指令을 添附하여 區裁判所는 長官에게 이 訴를 返戻한다. 이 條의 (A)를 實行하기 為하여 開始되는 訴訟이 係爭中에 있을 때는 合衆國政府나 長官은 第十一條 (A)에 依한 措置를 行하는 것을 阻害하거나 遲延시키지 아니한다.

## 罰則

**第十一條** (A) 合衆國의 區裁判所는 어느 누구든지 이 法律 또는 이 法律에 依하여 實行되는 計劃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하여, 司法上の 强制權이 부여된다. 이 法律에 依하여 必要하다고 보여지는 民間의 行爲는 檢察總長에 依하여 適切한 行爲로서 證明되어야 한다.

(B) 이 法律에 依하여 長官이 發動한 計劃

또는 規制의 規定을 故意로 違反한 者와 故意로 이 計劃이나 規則에 응하려 하지 아니하고 拒否한 者에게는 違反行爲 一件에 由하여 五千弗을 넘지 않는 額의 合衆國政府에 納付하는 罰金을 課하도록 한다. 또 이 罰金에 關하여 合衆國政府는 民事訴訟의原告가 될 수 있다. 違反行爲가 二日以上 계속 될 때는 각日을 각各 一違反行爲로 간주한다.

(C) 이 條의 規定은 現在와 今後法令에 依하여 公平한 見地로 보아 矯正措置의 對象이 될 수 있다.

## 登錄 報告 및 記錄의 保管

**第十二條** 長官은 計劃이 實施되고 있는 때이면 아닌 때이던 간에 規削에 依하여 다음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A) 계란생산자에 대하여, 長官에게 登錄시키는 일.

(B) 계란생산자에 대하여, 長官이 定하는 바에 따르는 계란의 生產, 採卵鷄의 數와 月齡, 계란의 生產者受取價格, 계란의 生產費其他 이 法律 또는 計劃의 運用에 關한 長官이 要求하는 情報를 長官에게 報告하는 일.

(C) 長官이 要求하는 帳簿와 記錄을 계란生產者가 保管하는 데 對한 規定, 이 帳簿와 記錄은 通常의 執務時間內에는 何時든지 長官의 代理人의 省察을 받을 때가 있다. 長官은 當該 生產者 또는 當該 生產者에 從屬하여 實質적으로 또는 法律의 으로 直接間接間に 支配하고 있다고 보이는 集團의 帳簿, 記錄, 所得, 稅申告書의 寫本, 計算, 去來에 關한 通信文, 契約, 書類나 備考가 운데서 長官이 適當하다고 認定되는 것을 調査할 수 있었다.

(D) 長官은 이 法律 또는 이 法律에 根基한 計劃의 運用에 있어서 合理의 으로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其他의 調査를 하며, 其他的 報告와 記錄을 要求할 수 있다.

## 資料의 機密

**第十三條** 이 法律의 運用에 關하여 長官에게 提供되었거나 長官이 要求한 모든 情報에 關하여는 農務省 및 委員會의 모든 職員은 그 内

容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이리하게 提供 또는 要求당한 情報는, 計劃이나 計劃에 依한 義務를 實行하거나 이를 지키기 為하여 必要하다고 長官이 認定할 때만이 訴訟이나 長官의 命令 또는 要求에 의한 行政上의 公聽會에 있어, 長官이나 合衆國政府의 官吏가 一方當事者이며, 또한 提供되거나 要求된 情報에 關聯된 計劃에 關한 때에 限하여 公開된다. 이 條의 規定은 (1) 計劃의 對象으로 되어 있는 多數者의 報告에 根基하여, 또는 누구로부터 提供된 情報인지 出處가 分明치 않음을 수 있는一般的인 狀況의 發表 長官의 命令에 依하여 行하여지는 計劃에 違反한 者나 그 違反한 規定에 對한 公表를 禁止하는 것은 아니다. 本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有罪가 된 者는 千弗以下の 罰金이나 一年以下の 徵役 또는 이 兩者를併科할 것이며 免職된다.

## 規則

**第十四條** 長官은 이 法律과 賦與된 權限을 行使하기 위하여 必要한 法令으로서 効力を 갖는 規則을 作成하는 權限이 주어진다.

## 調查

**第十五條** 長官은 이 法律에 根基한 義務를 行使하기 為하여 또는 어떤 者가 이 法律의 規定이나 이 法律을 實施하기 為한 計劃이나 規則을 違反하였거나 違反하는 것아될 行爲를 한다거나 하려고 할때는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調查를 할 수 있다. 이 調查를 為하여 長官은 宣誓와 證言을 行하게 하며 證人을 召喚하며 그 出席을 義務지우면, 證據를 採託하고, 調査에 關聯있다고 思料되는 帳簿나 書類의 製作을 要求하는 權限을 賦與받는다. 이리한 證人の 召喚과 記錄의 作成은 合衆國內의 如何한 場所에서도 要求할 수 있다. 證人으로서 召喚에 不應하거나 拒否한 者에 對하여 長官은 當該調査나 訴訟이 行하여지고 있는 場所 또는 그 者가 居住하거나 事業을 하고 있는 場所를 管轄하는 裁判所에 對하여 證人으로서의 召喚과 證言및 帳簿나 書類의 作成要求에 關한 協力を 求할 수 있다. 이때 當該 裁判所는 그 者에게 長官에게 出頭하여 調査中의 事項에 關한 記錄을 作成하고 또한 證言을 行하도록

要求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이러한 行爲는 그 者의 居住地의 裁判所나 그者가 發見된 場所의 裁判所에서 行하여질 수 있다.

## 定義

**第十六條** 이 法律에 있어 使用되는 다음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A) “長官”이란 農林部長官 또는 農務長官을 代理하여 行動하는 權限을 旣히 부여한, 혹은 今後 부여될 農務省의 職員을 말한다.
- (B) “者”란 個人 個人的 集團, 共同經營會社團體, 協動組合 또는 그외의 실존하는法人을 말한다.
- (C) “市販鷄卵” 또는 “鷄卵”이란 飼育되고 있는 닭이 낳은 알로서 穀附卵의 形態 또는 加工된 形態로서 사람에게 消費하기 위하여 販賣되는 것을 말한다.
- (D) “鷄卵生產者”란 市販鷄卵을 生產하는 닭을 飼育하고 있는 者를 말한다.
- (E) “닭”이란 20週齡 以上의 市販鷄卵을 生產하는 암탉을 말한다.
- (F) “合衆國”이란 美合衆國大陸內의 四十八州와 콜럼비아 特別區를 말한다.

- (G) 第七條 (G)에 있어서 “所有 또는 支配하는”이라 함은 그 者가 直接 혹은 間接으로 經濟上의 利益(單純한 債權者일 경우는 除外)을 갖거나, 그 者가 直接 또는 間接으로 事實上의 支配를 行하고 있는 닭을 말한다.

## 法律의 分離適用

**第十七條** 이 法律의 그 어떤 規定이나 그 適用이 그 어떤 者는 條件에 對하여 無効가 되었을 때에 있어서도 이 法律의 其他의 規定 또는 그 適用은 餘他의 者나 餘他의 條件에 對하는 有効性을 잃지 아니한다.

## 權限의 賦與

**第十八條** 이 法律의 規定을 實施하기 為하여 必要한 資金으로 其他의 方法에 依한 일이 不適當한 것들에 對하여는 財務省의 資金에 依할 수 있다.

## 發効日

**第十九條** 이 法律은 公布한 날로 부터 施行하고 公布한 날로 부터 二年後에 効力を 잃는다.